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 3258 호, 제 3259 호

다. 제출일자 : 2022. 5. 30.

라. 회부일자 : 2022. 6. 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 제1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 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 산 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 납 액 (B) | 미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 | 수납율(%) (B/A) |
|----------|-------|-------|--------------|--------------|------|---------|---------------|-----------------|
| | | | | | | 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 월 액 | |
| 2021 | 3,529 | 3,529 | 2,218 | 1,839 | 379 | | 379 | 82.9 |
| 2020 | 1,437 | 1,437 | 10,388 | 9,738 | 650 | 0 | 650 | 93.7 |
| 2019 | 2,323 | 2,323 | 1,931 | 1,467 | 464 | 0 | 464 | 76.0 |

- 세입예산현액은 35억 29백만원이었으나 실제 22억 18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18억 39백만원을 수납하고, 3억 79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3억 7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2.9% 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변경 사용 | 전용 | 이체 | 이용 | 예비비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불용율) |
|----------|-------|------------|----------|----|--------|----|-------|--------|--------|---------------|---------------|
| 2021 | 6,322 | 190 | 0 | 0 | 0 | 0 | 1,124 | 7,636 | 7,277 | 0 | 359 (4.7%) |
| 2020 | 6,383 | 0 | 1.2 | 0 | 10,493 | 0 | 4,110 | 10,493 | 9,877 | 190 | 426 (4.1%) |
| 2019 | 6,102 | 0 | 0 | 0 | 0 | 0 | 4,257 | 10,360 | 10,134 | 0 | 226 (2.2%) |

- 당초 예산액 63억 22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은 1억 9천만원, 예비비 11억 2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6억 36백만원 중 95.3%인

72억 77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3억 5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없음.
- 예산의 이체는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없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2건 5억 91백만원으로
 - 신청사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 3억 72백만원
 - 세종대로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 2억 19백만원

5)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 없음.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억 59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4.7%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집행잔액 | 불응율 (%) | 비고 |
|------|--------|------|---------|----|
| 2021 | 7,636 | 359 | 4.7 | |
| 2020 | 10,493 | 426 | 4.1 | |
| 2019 | 10,360 | 226 | 2.2 | |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3억 59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 산 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 납 액 (B) | 미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 | 수납율(% (B/A) |
|----------|-------|-------|--------------|--------------|------|---------|---------------|----------------|
| | | | | | | 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 월 액 | |
| 2021 | 3,529 | 3,529 | 2,218 | 1,839 | 379 | 0 | 0 | 82.9 |
| 2020 | 1,437 | 1,437 | 10,388 | 9,738 | 650 | 0 | 650 | 93.7 |
| 2019 | 2,323 | 2,323 | 1,931 | 1,467 | 464 | 0 | 464 | 76.0 |

가) 개 요

- 세입예산현액은 35억 29백만원이었으나 실제 22억 18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18억 39백만원을 수납하고, 3억 79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3억 7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2.9% 임.

나) 세수추계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의 경우 22억 18백만원은 예산현액 35억 29백만원의 62.9%에 해당하며, 13억 11백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표]와 같음.

[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크게 발생한 항목

(단위: 백만원)

| 편성목 | 예산현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 (b)-(a) | 수납내역 |
|----------|-------------|--------------|-------|---------|---|
| 경상적 세외수입 | | | | | |
| 기타이자수입 | 345 | 71 | 71 | △274 | ○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 - 9호선 2단계 916공구 소송승소금 이자 71백만원 |
| 임시적 세외수입 | | | | | |
| 위약금 | 247 | 4 | 4 | △243 | ○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지연배상금 4백만원 |
| 그외수입 | 2,909 | 1,739 | 1,739 | △1,170 | ○ 9호선 2단계 916공구 소송승소금 1,359백만원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가지급 판결금 176백만원 ○ 서초동 지중설비공사금 정산차액 119백만원 ○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철근 대금 오류금액 환수 36백만원 ○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공사비 환수금 3백만원 ○ 사가정길 확장공사 손해배상청구 공탁금 회수금 6백만원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화재시험 수수료 환불 2백만원 ○ 흥인지문 및 광희문 주변 성곽 연계성 회복공사 민사소송 판결 반환금 20백만원 ○ 스페이스살림 조성공사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환수 2백만원 ○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지장전주 이설공사 정산 환불금 7백만원 ○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 및 수당 반납 등 28건 9백만원 |
| 지난년도수입 | 28 | 403 | 24 | 375 | ○ 동부간선도로 태양광 발전소 사용료 23백만원 ○ 관급자재 낙찰자 계약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1백만원 |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2억 74백만원인데,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에 위탁공사비 보관금 및 공사 기성금과 같은 현금을 예탁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일상경비의 이자수입으로,

- 이는 세입이 일정치 않아 최근 5년간('15년~'19년) 실적의 평균액인 3억 45백만원으로 세입추계 하였던 것이나([표] 참조), 예상과 달리 부담금 보관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7천 1백만원이 징수결정된 상황으로, 추후에는 사전에 이자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표] 기타이자수입의 최근 5년간 결산액 및 세수추계 산출근거('15년 ~ '19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결산액 | 275 | 40 | 493 | 378 | 382 |
| ○ 세수추계 산출근거 - 최대·최소금액을 제외한 최근 5년간('15~'19)실적 평균액으로 추계 - (275백만원 + 378백만원 + 382백만원) ÷ 3 = 345 백만원 ※ '16년(최소), '17년(최대) 제외 | | | | | |

- 한편,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 중 기타이자수입 항목에서 환급액 10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그 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해야 할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의 수당 반납 건을 기타이자수입으로 오류처리하여 일반회계 그외수입으로 정정처리(2021.11.) 하였으며,
-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 1천 5백만원도 환급처리 되었는데, 이 또한 담당자의 착오로 도시철도특별회계로 세입처리해야 할 사유재산임대료 3건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함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로 반환처리(2021.7.) 한 사안으로 이와 같이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된 세입처리와 환급이 반복하여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는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위약금’은 지체상금 물량 및 가격의 추정이 어려워 최근 5년간(’16~’20년) 실적 평균액으로 추계하여 예산액 2억 4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표] 참조), 1건의 지체상금 4백만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2억 43백만원이 감소 징수되었는데,

[표] 위약금의 최근 5년간 결산액 및 세수추계 산출근거(’16년 ~ ’20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전망액) |
|---|------|------|-------|------|-----------|
| 결산액 | 254 | 261 | 3,468 | 18 | 227 |
| ○ 세수추계 산출근거 - 최대·최소금액을 제외한 최근 5년간(’16~’20)실적 평균액으로 추계 - (254백만원 + 261백만원 + 227백만원) ÷ 3 = 247 백만원 ※ ’19년(최소), ’18년(최대) 제외 | | | | | |

-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전 준공기한 초과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사전에 조사한 후 그 예측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그외수입’의 경우 공사 예산집행 정산금, 소송비용 환수금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예산액 29억 9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7억 39백만원으로 11억 7천만원(예산액 대비 40.2%)이 감소하였음.

- 당초 그 외수입은 최근 5년간(’16년~’20년) 실적 평균액(14억 78백만원)에 세입추계 시 환수결정된 9호선2단계 916공구 소송승

소금을 반영하여 예산현액을 편성하였으나 그 외 공사비용 정산 환수금 등에 대한 부과전수 미발생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징수 결정한 것임.

○ ‘지난연도수입’은 2021년도 예상 체납액(5억 7천만원)에 최근 5년간(‘16~’20년) 평균 징수율(4.9%)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예산현액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로는 4억 3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수납액은 2천 4백만원임.

- 금회 지난연도 수입의 결산 결과를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편성이 과소하고 실수납액과의 차도 과다하여 당초 지난연도수입에 대한 징수의지가 미약했다고 보여지는 바 적극적으로 장기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연례적으로 누적되어오는 장기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징수 원년에 초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다) 미수납액

○ 금회 미수납액은 전년(6억 5천만원) 대비 2억 71백만원 감소한 3억 79백만원인데, 건별 사유를 살펴보면 [표]와 같음.

[표]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 예 산 과 목 | 건수 | 미수납액 | 사 유 |
|--------------------|----|------|------------------------|
| 계 | 16 | 379 | |
| 지난연도수입 | 16 | 379 | ◦ 재산압류 중 -4건/182백만원 |
| ◦ 지체상금 2건 2억 57백만원 | 16 | 379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준공지역에 따른 지역배상금 -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지연배상금 ○ 그외수입 14건 1억 22백만원 - 공사비 과지급 환수금 5건 9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구간내 건물철거 비용확정에 따른 환수 2건 · 서남권 50+캠퍼스 경비 정산 환수 ·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선금 및 이자 반환 2건 - 소송비용 회수금 9건 31백만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및 부도 등 -12건/197백만원 |
|---|--|--|---|

- 이 중 재산압류 중이 4건에 1억 82백만원이며 폐업 및 부도 등 12건이 1억 97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 매 결산 심사때마다 미수납액의 고질적인 체납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해왔으나 매년 이월되고 있는 상황으로 강도 높은 체납징수의 방안이 필요하다 여겨지며, 아울러 초기체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변경 사용 | 전용 | 이체 | 이용 | 예비비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 집행잔액 (불용액) |
|------|-------|------------|----------|----|----|----|-------|--------|--------|-------------|---------------|
| 2021 | 6,322 | 190 | 0 | 0 | 0 | 0 | 1,124 | 7,636 | 7,277 | 0 | 359 (4.7%) |
| 2020 | 6,383 | 0 | 0 | 0 | 0 | 0 | 4,110 | 10,493 | 9,877 | 190 | 426 (4.1%) |
| 2019 | 6,102 | 0 | 0 | 0 | 0 | 0 | 4,257 | 10,360 | 10,134 | 0 | 226 (2.2%) |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63억 22백만원에 예비비 11억 24백만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76억 36백만원이며, 이 중 95.3%인 72억 77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59백만원 (4.7%)이 발생하였음.

나) 집행잔액 (불용액)

-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3억 59백만원으로 지난연도 대비 0.6%p 증가(4.1%→4.7%) 하였음([표] 참조).

[표]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예산 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율 (%) | 불 용 사 유 |
|-------------------------------------|----------|-------|-----|---------------|------------|---|
| 일반회계 | 7,635 | 7,277 | 0 | 358 | 4.7 | |
| 공공건축물안전자 문단운영 | 14 | 13 | 0 | 1 | 7.1 | - 자문위원수당 집행잔액 |
| 효율적인 청사관리 | 4,291 | 4,236 | 0 | 55 | 1.2 | - 코로나19로 인한 체력단련실 미운영 -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 발생 |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 564 | 560 | 0 | 4 | 0.7 | - 자문위원수당 집행잔액 |
|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 15 | 13 | 0 | 2 | 13.3 | - 2단계 발령이 없는 등 비상근무 횟수 감소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유지관리 | 401 | 364 | 0 | 37 | 9.2 | -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워 크숍등이 아닌 웨비나 (Web Based Seminar) 진행으로 예산 미집행 |
|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463 | 381 | 0 | 82 | 17.7 | - 계약심사를 통한 감액 과 낙찰차액 |
| 별점부과심의위원회 운영 | 9 | 4 | 0 | 5 | 55.5 | - 공사담당 및 안전관리과 안전점검 등으로 별점부과 신청건수 감소 |
| 신청사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 372 | 372 | 0 | 0 | 0 | - |
| 세종대로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 공사대금 청구소송 | 219 | 219 | 0 | 0 | 0 | - |
|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 532 | 532 | 0 | 0 | 0 | - |
| 기본경비 | 755 | 583 | 0 | 172 | 22.8 | - 정상적 경비로 집행잔액 |

- 먼저, ‘**별점부과심의위원회**’ 사업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안전점검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별점부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점 부과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당해연도 신규사업으로,

[표] ‘**별점부과심의위원회**’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예산편성 (B) | 2021예산집행 (A) | 불용액 (B-A) | 불용률 |
|-------|------------------|-----------------|--------------|-------|
| 계 | 9,600 | 3,999 | 5,601 | 58.3% |
| 사무관리비 | 9,600 | 3,999 | 5,601 | 58.3% |

- 금회 예산현액 960만원 대비 55.5%인 56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사유는 별점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감소하여 이를 심의하는 별점부과심의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 기존의 부실별점부과위원회는 내부위원(위원장-시설국장, 위원-본부 과장 4명)으로 구성되어 별점부과 심의와 이의신청 심의를 모두 시행해 왔으나,
- '20년 11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¹⁾이 신설됨에 따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별점심의위원회)** ① 제87조의2에 따른 별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별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별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별점을 부과한 사유·근거와 별점 부과 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③ 별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별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별점심의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당해연도부터 부실사항에 대한 별점부과는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부실별점부과위원회가 심의하고, 별점부과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시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별점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음.

별점 심의절차 개선 계획 - 총무부-2888 (21.2.16.)

【기 존】

부실별점부과위원회 - 「부실별점부과위원회 통합운영계획」(본부장 방침, 2018.8.28.)

- 기 능 : 별점부과 심의 + 이의신청 심의
- 구 성 : 위원장(시설국장), 위원(본부 과장 4명)
- ※ 본부 과장급 인력풀(50명 내외)에서 위원 임의 선정

【개 선】 : 2개 위원회로 이원화

1. 부실별점부과위원회 - 부실사항에 대한 별점부과 의뢰 접수시

- 기 능 : 별점부과 심의
- 구 성 : 위원장(도시철도국장), 위원(본부 과장 4명)
- ※ 본부 과장급 인력풀(50명 내외)에서 위원을 임의 선정(기존과 동일)

2. 별점심의위원회 - 별점부과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시

-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별점심의위원회),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호)
- 기 능 : 이의신청 심의
- ※ 이의신청 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심의 실시(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 구 성 : 위원장(시설국장), 위원(외부 전문가 6명 이상)
- 임 기 : 위원으로 선정된 날 ~ 심의가 종료·확정될 때까지(연임 가능)
- 수당지급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 및 사전검토 수당 지급

- 최근 3년간 부실별점부과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표] 참조) 당해연도의 심의 안전수가 전년도에 비

해 감소하였는데, 건설공사의 공사담당자 및 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 강화에 따른 부실현장 적발 건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임.

[표] 최근 3년간 별점부과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연도 | 위원회 개최횟수 (회) | 안전수 (개) | 별점부과 심의 | |
|------|-----------------|------------|---------|---------|
| | | | 별점부과 심의 | 이의신청 심의 |
| 2019 | 7 | 20 | 14 | 6 |
| 2020 | 8 | 18 | 11 | 7 |
| 2021 | 7 | 10 | 6 | 4 |

- 안전점검 강화로 별점이 부과된 현장이 줄어들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감소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이의신청 심의 감소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는바 감소추세인 심의안전수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음.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유지관리’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의 공정 관리 및 현장안전관리 상황 등을 공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까지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 40억 1백만원 대비 9.2%인 37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예산편성 (B) | 2021예산집행 (A) | 불용액 (B-A) | 불용률 |
|-------|------------------|-----------------|--------------|-------|
| 계 | 401,461 | 364,020 | 37,441 | 9.3% |
| 공공운영비 | 376,173 | 354,768 | 21,405 | 5.7% |
| 사무관리비 | 25,288 | 9,252 | 16,036 | 63.4% |

- 불용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당해 연도 사무관리비 25백만원의 63.4%에 해당하는 16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국내외 정책 공유' 워크숍을 대면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웨비나(Web Based Seminar)로 진행함에 따라 미집행된 것으로 불가피한 불용이라 사료됨.
- 다음으로,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당해 연도 예산현액 7억 55백만원 대비 22.8%인 1억 72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자제 및 체육대회 집합금지 등 복무지침에 따른 국내여비 1억 3백만원과 공공운영비 3천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백만원 등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2021년 ‘기본경비’의 예산과목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 예산액 | 지출액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율 (%) | 비 고 |
|------------|-----|-----|---------------|------------|-----------------------|
| 기본경비 | 755 | 583 | 172 | 22.8 | |
| 사무관리비 | 350 | 323 | 27 | 7.7 | 집행잔액 |
| 공공운영비 | 65 | 32 | 33 | 50.7 | 코로나19로 차량운영 유지비 감소 |
| 국내여비 | 209 | 106 | 103 | 49.1 | 코로나19로 출장여비 감소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20 | 20 | 0 | 0 | - |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7 | 1 | 6 | 85.7 | 코로나19로 행사비 미집행 |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27 | 27 | 0 | 0 | - |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77 | 73 | 4 | 5.2 | 집행잔액 |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사용은 2건 5억 91백만원으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따른 것임.

[표 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번 | 내 역 | 금 액 | 지출일자 |
|-----|---------------------------|-----|-----------|
| 1 | 신청사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 372 | 21. 2. 16 |
| 2 | 세종대로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공사대금 청구소송 | 219 | 21. 8. 23 |

- 먼저, ‘신청사 건설공사 공사대금 소송비용’ 지급은 신청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외 2개사가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공사기간이 연장(1,208일)되어 간접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6월 3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패소하여 소송비용 상환을 위해 예비비 3억 72백만원을 집행한 것임.

‘신청사 건설공사’ 개요

-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사업기간 : 2006.5.15.~2013.2.15.
- ▷ 계약금액 : 2,758억원.
- ▷ 규 모 : 지하5층/지상13층, 연면적 90,788㎡
- ▷ 계약업체 : 삼성물산(주), 에스케이건설(주), 쌍용건설(주)
- ▷ 쟁점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 지출, 공사기간 연장(1,208일)에 따른 간접비 청구

- 소송 경위를 살펴보면, 1심 판결에서 문화재심의 부결 후 서울시가 새 디자인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추가 설계비 및 공사대금 등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는 1심을 일부패소(’16.11.11.)하고 2심 또

한 일부패소('20.1.8)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20.6.4.)되었음.

-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공사 공사대금 소송'은 세종대로특화공간조성공사의 시공자인 (주)양광건설 외 1개사가 발주자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249일)되어 간접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 1심 판결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를 결정함에 따라 판결금에 대한 이자발생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2억 19백만원을 선집행한 것임.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공사' 개요

-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0-6 외 5필지
- ▷ 사업기간 : 2016.10.19. ~ 2018.12.30.
- ▷ 계약금액 : 11,767,217,000원
- ▷ 규 모 : 지하3층/지상1층, 연면적 2,998.23㎡
- ▷ 계약업체 : (주)양광건설, (주)신성종합건설

- ▷ 쟁점사항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 증 249일 (3회 계약변경)
 - '16.10.26. ~ '17.4.25. → '16.10.26. ~ '17.12.23.

- 한편,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²⁾」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시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2)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설국 소관 '21년 1분기 및 3분기에 사용한 예비비 내역을 기한 내 보고를 누락하고 이번 제308회 정례회에 뒤늦게 보고할 예정임.
- 예비비 지출의 보고 및 승인은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조례로 정한 사용보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경과하는 행정 미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